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 가이드라인



• #







유의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R&D조세지원제도를 활용 시, 자가진단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 •모든 제공된 예시와 자료는 참고용으로 특정 활동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확정적 요인은 아니며 법적·행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프라스카티 매뉴얼, 조세특례제한법,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으며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 만약 귀하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개념과 정의	06
①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	09
Ⅲ 바이오 분야 제품개발 단계 및 연구개발활동 부합도	11
1. 바이오소재 연구개발활동	13
2. 신약 연구개발활동	18
3. 제네릭 연구개발활동	24
4.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활동	30
①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36
부록	
1.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38
2.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및 연구노트 서식	50



가이드라인의 목적 -

-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R&D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다양한 R&D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뒷장 R&D조세지원제도 참조).
- □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판단이 모호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의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기업이 R&D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개발활동의 적격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

- 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활동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관련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활동 범위와 체크리스트]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보와 연구개발활동 부합도를 높이기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 [연구개발활동 분쟁사례] 기업과 과세당국간 R&D 세액공제 분쟁요인별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검색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문 검색) www.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주요 판례 및 사전답변 질의 검색) txsi.hometax.go.kr/docs/main.jsp

 항 목	내 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15%, 이후 2년간은 10% 당기분 세액공제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통합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를 추가공제(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함 - 기본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액×(1~10%)]+추가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3년 연평균투자액)×3%]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10%,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3%, 대 기업: 설비투자 금액×1%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취득한 기술('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대여한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세액감면 ※ 기술이전: 발생소득 법인세(소득세)에서 50%감면 ※ 기술대여: 발생소득 법인세(소득세)에서 25%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다목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대상기술이 같은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연구개발 특구 첨단기술 기업 등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

「관세법」 제90조 제1항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개념 및 정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개념 및 정의

연구개발활동의 개념 및 정의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신제품 개발, 신기술 창출, 서비스 개발 또는 진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2012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① 연구개발활동 범위의 확대

2011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과학기술 R&D 활동"에 제한되어 있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 R&D 활동"까지 확대

[기업측면에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들]

판단기준 ^②	내 용
신규성	 기존 상품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 제품의 기능적 변화, 성능적 개선, 새로운 디자인은 신규성에 부합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및 아이디어를 위한 개발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
	•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활동
창의성	-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고객응대, 시장조사 등)은 제외되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
	- (예시) 일상적인 데이터 처리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활동범위에 해당
	• 연구개발활동은 다양한 불확실성(비용, 시간, 결과물)을 내포함
불확실성	- (예시)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기술적 개념 등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
	• 연구개발활동은 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관리 되어야 한
체계성	- 연구인력이 연구개발 직무를 전담하고 있어야 함
	- 연구설비는 제품 제조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또한, 연구보고서와 같이 연구 프로세스와 결과를 기록으로 보관
재현가능성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결과물은 다른 회사, 조직, 연구원한테 이전이 가능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재현 가능한 성과이어야 함 - (예시) 연구결과물인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행위 등은 연구결과의 이전·재현 가능성을 보여줌

② 판단기준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재현가능성은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며, 법원, 조세심판원 등에서 연구개발활동 범위가 쟁점사항일 때 해당 요소를 고려함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기술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활동과는 상이하여, 이를 기업 연구개발 현장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해석함

③ 프라스카티 메뉴얼

프라스카티 매뉴얼은 연구개발 통계 및 조사분석을 위한 OECD의 표준지침으로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지침서

^{*}참고: 프라스카티 매뉴얼 (7차 개정, 2015), OECD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

- R&D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연구조직에 속한 연구 인력은 연구개발활동만 수행
- 하단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R&D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성립합니다.

[R&D조세지원혜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체크
	연구조직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되어 있다.	
연구 조직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조직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연구조직에 소속된 연구인력은 연구활동만 전담하고 있다.	
연구 인력	연구 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전공, 학력, 자격증 등)	
설비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등은 연구활동 이외의 판매를 위한 생산, 영업활동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이 아니다.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이 아니다.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이 아니다.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이 아니다.	
非연구 개발 활동 ²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가 아니다.	
제외여부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이 아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이 아니다.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제작하는 활동이 아니다.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이 아니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기업 내 연구개발활동 독립성이주요요건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번료]

② 연구개발제외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조의2 (정의)에서 연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9개 활동을 규정함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관련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제품개발 단계 및 연구개발활동 부합도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직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제품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부합도를 제시합니다.
- 또한, 해당 직무영역이 연구개발활동에 부합하는지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재현가능성 5가지 요소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제품개발단계 연구개발활동 사례(판례, 심판결정례)를 통해 소송, 심판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과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 ★ 기업의 제품개발단계를 연구개발활동의 부합도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 부합도 높음>, <연구개발부합도 낮음>으로 구분
-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인 『연구개발활동 공통·필수 체크리스트』를 충족한다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
- [연구개발 부합도 높음] 연구개발 목적, 절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여부가 판단되지만, 대체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
- [연구개발 부합도 낮음] 해당 직무목적이 연구개발활동과 상이하여 예외적인 경우만 연구개발활동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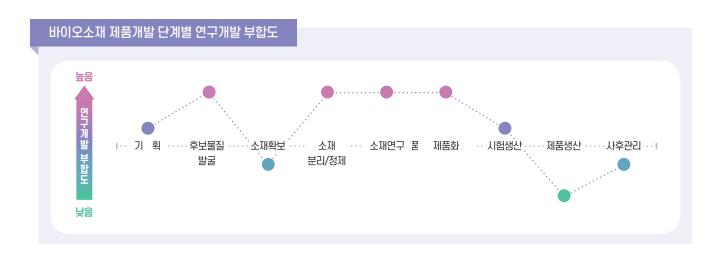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활동

-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 2) 신약 연구개발
 - 3) 제네릭 연구개발
 - 4)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
- 제품별 특성에 따라 바이오 분야를 분류하여 각각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부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합니다.

· 바이오 분야 분류

구분	분류	내용
소재	바이오소재	바이오소재는 미생물, 식물 및 동물세포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용한 물질을 가공 또는 조제함으로써 제품화가 가능한 산물을 총칭하며 기본적으로 의약품, 식품, 산업용품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거나 직접 상품으로 이용
		- 프로세스 차별성: 바이오소재 개발 과정은 일반적인 제조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유사하나, 신규 바이오소재에 대한 소재 발굴 및 분리/정제 과정에서 차별성을 보임
	신약	신약은 특별한 기능의 신물질이나 기존 물질의 새 효능을 의약품으로 만들어 보건당국의 제조승인을 받은 제품 - 프로세스 차별성: 신약개발 과정에는 안정성, 내약성,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단계가 포함
의약품	제네릭	제네릭은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 품질의 제품 - 프로세스 차별성 :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약효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허가규정이 간단하면서 빠른 개발이 가능 - 프로세스 차별성: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은 의약품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안전성 시험 항목 및 횟수, 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인체적용시험을 수행

- 바이오소재의 신제품(상품)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후보물질 발굴,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제품생산, 사후관리 9개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 ※ 다음 제시된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산업분야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소재 제품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항 목	내 용
1	●기 획	아이디어 수집, 아이디어 선별을 통해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후보물질 발굴	신물질에 대한 분자설계, 구조분석, 합성 및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후보물질을 선정
3	소재확보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4	소재 분리/정제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
5	소재연구	제품이 상용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개선점,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규 기술개발 요소를 탐색
6	제품화	연구된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능, 디자인 등을 창출, 개선
7	시험생산	제품 출시 전 시험 생산과정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양산을 위한 공정을 최적화
-	제품생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판매를 위한 제품으로 생산
8	사후관리	판매된 제품의 기술지원, 고객 불만 요소 해소 및 판촉활동, 고객 대응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획득
		 ●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事연구개발활동

[바이오소재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 동 체크리스트는 연구개발활동의 부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 부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리스트	체크
	제품이 자사에서 생산하는 기존 제품과 기능적, 기술적 또는 디자인적으로 개선되었다.	
신규성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또는 제품이 생산되었다.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	
창의성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936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은 없었다.	
	제품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였다.	
불확실성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입예정 연구인력, 비용 등이 변할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의 예상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물성, 효능,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 또는 효능이 보장된'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 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체계성	연구과정을 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MAIO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연구개발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제품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	
가능성	연구 결과물을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 전달 할 수 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	

●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후보물질 기획 소재확보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제품생산 사후관리 분리/정제 발굴 ① 기획단계

• 아이디어 수집·선별을 통해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디어 선정과정에서 시장환경, 예상이익 등 경영활동과 연관된 시장조사
- 연구개발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활동
-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기획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노트, 콘티형태의 스케치
- 아이디어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 또는 녹취기록
- 아이디어 선정평가 기준과 과정 등을 담은 심사평가서
- 연구개발수행 인력 조직도와 직무설명서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활동 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인정을 위해 제출한 개발관리 체계도, 기초연구개발 실적 및 응용연구개발사례에 따르면 각 연구개발은 현장 확인 당시 확인된 생산 공정과는 뚜렷이 구분되어 이를 그 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조레심판사례 비추어 볼때 연구개발활동을 행했다고 본다. (조심 2015중2163)



흐부물질 기획 소재확보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제품생산 사후관리 분리/정제 발굴

• 신물질에 대한 분자설계, 구조분석, 합성 및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 (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물질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정리활동

후보물질 기획 소재확보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제품생산 사후관리 분리/정제 발굴



•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통상적으로 소재확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소재확보 과정 중 새로운 후보물질의 발굴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

●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후보물질 **소재** 기획 발굴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제품생산 시후관(



④ 소재 분리/정제 단계

•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재 분리/정제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 소재 분리/정제 과정이 연구개발보다 생산공정에 공유되어 온전히 연구개발 공정이 아닌 경우
- 제품연구의 초기단계라도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은 연구개발실에서 수행한 샘플패턴의 제작과 봉제는 샘플패턴의 배치에 따라 더 많은 의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고유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6중0833)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 [발 소재연구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연구된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능, 디자인 등을 창출, 개선하는 과정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화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제품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경영, 영업, 행정 등)을 겸한다면, 전담 연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영업 및 A/S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직의 관리자들 또한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 이외의 업무까지도 모두 총괄하는 기관장이므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후보물질 기획 소재확보 소재연구 제품화 시험생산 사후관리 제품생산 분리/정제 ⑦ 시험생산 단계

• 제품 출시 전 시험 생산과정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양산을 위한 공정을 최적화 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생산을 위한 설비가 아닌 실제 제품 생산으로 사용된 설비인 경우 연구 해당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술 개선이 없는 단순한 공정 최적화 과정
- 시험생산의 결과물을 판매했을 경우



시험생산의 경우 제품생산 단계와 프로세스 경계가 모호하여 조세지원 과정 중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단계로, 일반적인 생산공정과 차별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이나 신제품 공정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제품 생산공정에 대한 생산자용 운영교본이나 지침
- 시험가동 내역 및 생산품의 결과보고서, 개선된 공정도
- 공정에 대한 노하우, 기술자료, 경험 등을 작성한 연구노트
- 공정에 대한 구체적 설비와 공장설계를 기록한 문건



주요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 생산에 필수적인 검사설비 내지 제조설비로 보이고, 샘플 제작 등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설비를 운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설비들이 순수한 연구시험 목적의 설비인지, 해당 공장의 제품 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인지 등을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조심 2014증1118)

> 후보물질 소대 기획 소재확보 시험생산 소재연구 제품화 제품생산 사호관리 발굴 분리/정제 ...

⑧ 사후관리 단계

• 제품 출시 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통상적으로 소재확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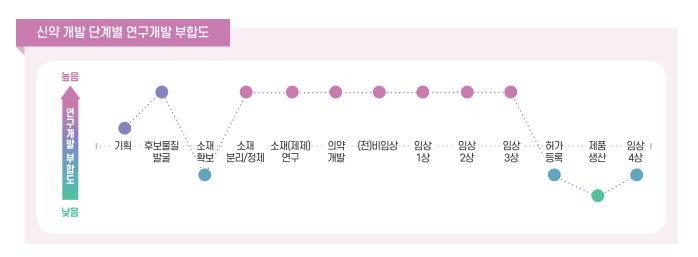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단순 고객대응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연관된 특수한 피드백 수집이 목적으로 운영
-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계기로 하여. 특정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될 만한 창의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조례심판서례 연구업무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후보물질 발굴,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제제)연구, 의약개발, (전)비임상, 임상 1~3상,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13개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 ※ 다음 제시된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산업분야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기 획	
후보물질 발굴	약물 타겟을 억제하기 위한 화합물질 합성(분자설계, 구조분석),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
● 소재확보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 소재 분리/정제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의약개발	실제 의약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적으로 생산
(전)비임상	체내동태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사
임상 1상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과 내약성 평가, 효능에 대한 일차적 근거 확보
임상 2상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용법, 용량을 결정
임상 3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 요법과의 결과 비교 및 의약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
하기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기를 취득
제품생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판매를 위한 의약품으로 생산
● 임상 4상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소재 분리/정제 소재(제제)연구 의약개발 (전)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허가등록 제품생산

[신약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 동 체크리스트는 연구개발활동의 부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 부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리스트	체크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또는 의약품이 생산되었다.	
신규성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정을 개발하였다.	
úтó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특정 효능을 목적으로 하는 신제품(의약품) 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창의성	제품을 개발하거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였다.	
9 <u>3</u> 6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은 없었다.	
	의약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입예정 연구인력, 비용 등이 변할 수 있다.	
불확실성	기획단계에서의 예상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물성, 효능,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임상과정 중에 부작용 및 이상시례가 발생하여 이전 연구개발단계로 되돌이갈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 또는 효능이 보장된' 판매용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 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체계성	연구과정을 연구노트 ,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ЛІЛІО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연구개발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재현 가능성	제품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	
세번 기급성	연구 결과물을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 전달 할 수 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기획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① 기획단계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확보 분리/정제 연구

(전)비임상 개발

. .

임상 . . .

허가 등록

제품

임상

...

연구개발활동

• 의약학적 개발목표(목적, 효능)를 설정하고,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디어 선정과정에서 시장환경, 예상이익 등 경영활동과 연관된 시장조사
- 연구개발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활동
-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기획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노트, 콘티형태의 스케치
- 아이디어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 또는 녹취기록
- 아이디어 선정평가 기준과 과정 등을 담은 심사평가서
- 연구개발수행 인력 조직도와 직무설명서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활동 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인정을 위해 제출한 개발관리 체계도, 기초연구개발 실적 및 응용연구개발사례에 따르면 각 연구개발은 현장 확인 당시 확인된 생산 공정과는 뚜렷이 구분되어 이를 그 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조레심판사레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활동을 행했다고 봄 (조심 2015중2163)



② 후보물질 발굴 단계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전) 임상 임상 임상 허가 제품 임상 확보 분리/정제 개발 발굴 연구 비임상 1상 2상 3상 등록 생산

• 약물 타겟을 억제하기 위한 화합물질 합성(분자설계, 구조분석) 및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 (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물질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정리활동

기획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확보 분리/정제 연구

(전)비임상 개발

허가 등록

생사

4상

③ 소재확보 단계

•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통상적으로 소재확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소재확보 과정 중 새로운 후보물질의 발굴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④ 소재 분리/정제 단계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전) 임상 임상 임상 허가 제품 임상 발굴 확보 **분리/정제** 연구 개발 비임상 1상 2상 3상 등록 생산 4상

•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재(제제) 의약

연구

개발

비임상

1상

2상

3상

등록

4상

소재 분리/정제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 소재 분리/정제 과정이 연구개발보다 생산공정에 공유되어 온전히 연구개발 공정이 아닌 경우
- 제품연구의 초기단계라도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⑤ 소재(제제) 연구 단계

•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하는 단계

후보물질 소재



소재(제제) 연구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소재 소재 확보 분리/정제



⑥ 의약개발 단계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전)비임상 임상 임상 허가 제품 임상 발굴 확보 분리/정제 연구 **개발** (전)비임상 1상 2상 3상 등록 생산 4상

• 실제 의약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개발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의약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경영, 영업, 행정 등)을 겸한다면, 전담 연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영업 및 A/S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직의 관리자들 또한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 이외의 업무까지도 모두 총괄하는 기관장이므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재료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수행하면,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인 '자체연구 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非연구개발활동



⑦ (전)비임상 단계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제제) 의약 소재 (전) 임상 등록 확보 분리/정제 연구 비임상 1상

• 체내동대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안전성 평가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비임상 시험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전)비임상 시험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⑧ 임상 1상 단계

소재(제제) 의약 소재 임상 기회 (전)비임상 확보 분리/정제 연구 발굴 개발 2상 1상 3상 등록 생신 4상

•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과 내약성 평가, 효능에 대한 일차적 근거 확보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상 1상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임상 시험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9 임상 2상 단계

소재 소재 소재(제제) 의약 확보 분리/정제 연구 개발 임상 후보물질 소재 허가 기획 (전)비임상 4상 발굴 1상 2상 3상 등록 생산 ...

•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용법, 용량을 결정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상 2상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⑩ 임상 3상 단계

소재 소재(제제) 의약 임상 임상 기획 (전)비임상 분리/정제 4상

•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 요법과의 결과 비교 및 의약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상 3상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임상 시험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⑪ 허가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단계



통상적으로 허가등록 과정은 제품생산을 위한 단계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⑫ 임상 4상 단계

소재(제제) 의약 후부물질 소재 사재 임상 제품 (전)비임상 발굴 확보 분리/정제 연구 개발 1상 3상 등록 생산 4상

•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통상적으로 임상 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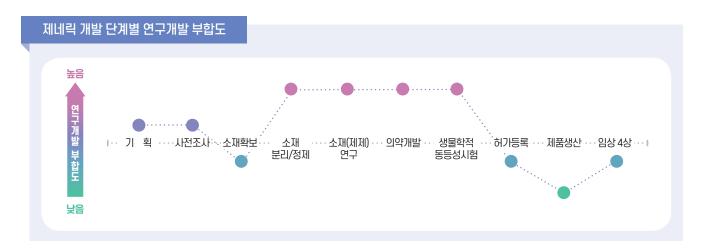
- 단순 환자 대상 부작용 확인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연관된 특정 케이스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한 경우
- 임상 4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을 계기로 하여, 특정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될 만한 창의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조레심판서레 연구업무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 제네릭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사전조사,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제제)연구, 의약개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10개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 다음 제시된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산업분야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릭 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항 목	내 용
1	●기 획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 사전조사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특허 분석, 시장성 및 환경분석 등을 조사
3	소재확보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4	소재 분리/정제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
(5)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6	의약개발	실제 의약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적으로 생산
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임상시험의 일종으로 주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
8	● 허가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 취득
-	제품생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판매를 위한 의약품으로 생산
9	임상 4상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면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제네릭 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 동 체크리스트는 연구개발활동의 부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 부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리스트	체크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또는 의약품이 생산되었다.	
신규성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정을 개발하였다.	
ĽπÖ	새로운 천연물 소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특정 효능을 목적으로 하는 신제품(의약품) 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창의성	제품을 개발하거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였다.	
<u>97</u> 9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은 없었다.	
	의약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입예정 연구인력, 비용 등이 변할 수 있다.	
불확실성	기획단계에서의 예상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물성, 효능,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임상과정 중에 부작용 및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이전 연구개발단계로 되돌이갈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 또는 효능이 보장된' 판매용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 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체계성	연구과정을 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MMO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연구개발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재현 가능성	제품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	
세한 기이어	연구 결과물을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 전달할 수 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	

연구개발활동

기회

사전조사

소재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제제) 연구

이약 개발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① 기획단계

•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디어 선정과정에서 시장환경, 예상이익 등 경영활동과 연관된 시장조사
- 연구개발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활동
-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기획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노트, 콘티형태의 스케치
- 아이디어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 또는 녹취기록
- 아이디어 선정평가 기준과 과정 등을 담은 심사평가서
- 연구개발수행 인력 조직도와 직무설명서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활동 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인정을 위해 제출한 개발관리 체계도, 기초연구개발 실적 및 응용연구개발사례에 따르면 각 연구개발은 현장 확인 당시 확인된 생산 공정과는 뚜렷이 구분되어 이를 그 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조레심판사레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활동을 행했다고 봄 (조심 2015중2163)



② 사전조사 단계

의약 소재 소재(제제) 기획 사전조사 소재확보 생물학적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분리/정제 연구 개발 동등성시험

•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특허 분석, 시장성 및 환경분석 등 사전 조사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非연구 개발조직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성 분석(운영비용, 마케팅비용, 판매량 및 예상 수익 등)을 수행
- 연구개발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활동
-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사전조사 활동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를 위해 진행했던 스터디 그룹 회의록
- 기술평가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개발활동 보고서, 평가보고서
- 관련 세미나(학회, 기술 컨퍼런스 등) 참석시 조사목적과 성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 연구개발 수행 인력 조직도와 직무설명서



사측이 조세심판원에 제시한 자동차시트 설계관련 **연구성과 목록과 그에 대한 증빙(동영상)**은 전담연구인력이 연구개발을 수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조심 2015부3732)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기획 사전조사 **소재확보** 소재 소재(제제) 의약 생물학적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분리/정제 연구 개발 동등성시험

③ 소재확보 단계

•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통상적으로 소재확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소재확보 과정 중 새로운 후보물질의 발굴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재 분리/정제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소재 분리/정제 과정이 연구개발보다 생산공정에 공유되어 온전히 연구개발 공정이 아닌 경우
- 제품연구의 초기단계라도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한 단계



소재(제제) 연구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소재 소재(제제) 사전조사 소재확보 분리/정제 연구

의약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⑥ 의약개발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의약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성적으로 생산하는 단계



의약개발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의약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경영, 영업, 행정 등)을 겸한다면, 전담 연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영업 및 A/S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직의 관리자들 또한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 이외의 업무까지도 모두 총괄하는 기관장이므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재료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수행하면,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인 '자체연구 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기획 사전조사 소재확보 ^{소재 도시[[시]}시기 연구 소재(제제) 의약 __ , _______ 하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개발 **동등성시험**

.....



⑦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단계

• 임상시험의 일종으로 주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임상 시험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 사전조사 소재확보 소재 소재(제제) 의약 생물학적 **허가등록** 제품생산 임상 4상

⑧ 허가등록 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단계



통상적으로 허가등록 과정은 제품생산을 위한 단계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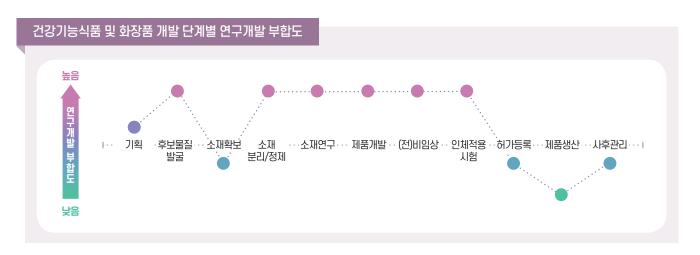
통상적으로 임상 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성을 높여줍니다.
- 단순 환자 대상 부작용 확인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연관된 특정 케이스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한 경우
- 임상 4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활동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후보물질 발굴, 소재확보, 분리/정제, 소재연구, 제품개발, (전)비임상, 인체적용시험,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11개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 ※ 다음 제시된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산업분야의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항 목	내 용
1	기획	아이디어 수집·선별을 통해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후보물질 발굴	신물질에 대한 분자설계, 구조분석, 합성 및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후보물질을 선정
3	소재확보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4	소재 분리/정제	학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
5	소재연구	
6	제품개발	기획단계의 개발목표에 해당하는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적으로 생산
7	(전)비임상	제내동대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안전성 평가 시행
8	인체적용 시험	특정 식품 및 화장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시험 또는 중재시험을 실시
9	하가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 취득
-	제품생산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판매를 위한 제품으로 생산
10	사후관리	출시 후 고객 사용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排연구개발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 동 체크리스트는 연구개발활동의 부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 부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리스트	체크
신규성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또는 의약품이 생산되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정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천연물 소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특정 효능을 목적으로 하는 신제품(의약품) 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창의성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은 없었다.	
불확실성	제품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입예정 연구인력, 비용 등이 변할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의 예상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물성, 효능,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중에 부작용 및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이전 연구개발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 또는 효능이 보장된'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체계성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 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연구과정을 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연구개발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재현 가능성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기여하였다.	
	제품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한다.	
	연구 결과물을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 전달할 수 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	

● 연구개발활동

후보물질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소재

● 非연구개발활동

① 기획단계

(전)비임상 기획 확보 분리/정제 여구 개발 시험 발굴 ...

소재

• 아이디어 수집·선별을 통해 후보 품목의 선정 및 제품단계까지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소재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디어 선정과정에서 시장환경, 예상이익 등 경영활동과 연관된 시장조사
- 연구개발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활동
-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기획



제품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쟁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아이디어노트, 콘티형태의 스케치
- 아이디어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 또는 녹취기록
- 아이디어 선정평가 기준과 과정 등을 담은 심사평가서
- 연구개발수행 인력 조직도와 직무설명서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활동 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인정을 위해 제출한 개발관리 체계도, 기초연구개발 실적 및 응용연구개발사례에 따르면 각 연구개발은 현장 확인 당시 확인된 생산 공정과는 뚜렷이 구분되어 이를 그 공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조레심판사레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활동을 행했다고 봄 (조심 2015중2163)



(전)비임상 인체적용 후보물질 소재 소대 소재 제품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확보 분리/정제 연구 발굴 개발 시험

• 신물질에 대한 분자설계, 구조분석, 합성 및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 (효능검색 등)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물질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정리활동

• 소재 합성을 위한 원물/원료 수배 및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 확보



통상적으로 소재확보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소재확보 과정 중 새로운 후보물질의 발굴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 계획서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제품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발굴 확보 **분리/정제** 연구 개발 (전)비임상 시험 하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② 소재 분리/정제 단계

• 확보된 원물 또는 화합물에서 후보물질의 추출/분리/정제 과정을 체계화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재 분리/정제 단계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소재 분리/정제 과정이 연구개발보다 생산공정에 공유되어 온전히 연구개발 공정이 아닌 경우
- 제품연구의 초기단계라도 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제품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소재연구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 非연구개발활동

⑥ 제품개발 단계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기획 (전)비임상 확보 분리/정제 여구 . . . 👝 . . .

• 기획단계의 개발목표에 해당하는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표로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발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 의약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경영, 영업, 행정 등)을 겸한다면, 전담 연구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영업 및 A/S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직의 관리자들 또한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 이외의 업무까지도 모두 총괄하는 기관장이므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재료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수행하면,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인 '자체연구 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후부물질 발굴

소재 소III 확부 분리/정제

소재 연구 제품 개발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체내동태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안전성 평가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비임상 시험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임상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⑧ 인체적용시험 단계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제품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특정 식품 및 화장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시험 또는 중재시험을 실시하는 단계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체적용시험은 연구개발활동의 기본요건 (전담연구인력, 자체연구개발)만 갖추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위탁기관에서 수행된 인체적용시험
- ☞ 위탁 및 공동연구를 받는 기업이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지출연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제품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



⑨ 허가등록 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단계



통상적으로 허가등록 과정은 제품생산을 위한 단계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획 후보물질 소재 소재 소재 제품 전)비임상 인체적용 허가등록 제품생산 **사후관리**



⑩ 사후관리 단계

• 출시 후 고객 사용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통상적으로 사후관리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단순 고객대응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연관된 특수한 피드백 수집이 목적으로 운영
-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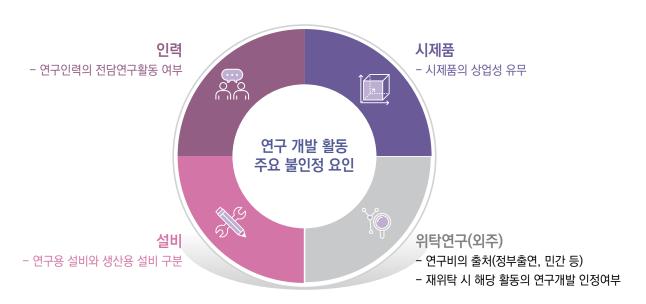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 연구개발활동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력, 시제품, 설비, 위탁연구(외주)가 기업과 과세당국간 주요 분쟁 요인

- 조세심판원의 2010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심판청구, 판례, 질의회신 559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분쟁 요인별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력 :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
- 설비 : 쟁점 설비의 용도(연구용, 생산용)
- 공동 위탁연구 : 공동 위탁연구비의 출처(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등) 및 관련 활동의 연구개발활동 인정여부
- 시제품 : 시제품 단계의 범위와 상용화된 일부 서비스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분쟁요인별 판단기준]



- 분쟁 사례의 판결, 조세심판 조문을 시나리오로 알기 쉽게 정리
- ※ 하나의 분쟁사례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항 목

인력

사례구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2017.07.13.), 국승(기업패소)

분쟁요인

고객전담조직 영업 및 AS 관련업무의 연구개발활동 세액공제 가능여부

A기업은 석유화학사업, 정보소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B연구소와 C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 및 인정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B연구소**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C연구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B연구소와 C연구소의 소장과 C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공제 신청





과세 관청

"C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활동 외 영업 및 A/S등 다른 업무를 수행,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각 연구소장은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 이외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기관장이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C연구소에서 개발한 소재와 기술이 고객의 공정에 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협업이 필수"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교육 등은 해당 소재 및 기술 개발한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연구개발활동 본연의 업무이다."



66



"C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고객 대응 활동들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원

-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업활동
 - ② 조직 성과 평가 기준이 연구성과 창출, 특허 확보와 같은 일반적인 성과가 아닌 고객 확보, 신규 시장 개척, 기존 시장 확대로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지표

① C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활동은 제품의 고장이나 불량으로 인한 불만사항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만,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계기로 특정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다면 해당 업무는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인력] 사례 2

 항 목
 인력

 사례구분
 조세심판 : 조심-2019-전-3765(2019.12.26.), 기각(기업패소)

 분쟁요인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의 연구개발활동 세액공제 해당 여부

A기업은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기구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B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 및 인정





A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B연구소장과 상품 기획팀 본부장을 겸직한 임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공제 신청



과세 관청

"B연구소 이외 상품기획팀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

"조직도 상에서 연구소와 상품기획본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A기업은 상품기획팀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해당 팀의 급여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상품기획팀과 같이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선결정례 상 연구개발업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은 제품개발에도 필수적인 업무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결재 내역과 같은 근거들은 형식상 직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내용일 뿐 연구전담인력에 해당한다."





— 법원 "B연구소 이외 상품기획팀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① A기업의 조직도에는 상품개발본부에 기술연구소와 상품기획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해 상품기획팀 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A기업은 각종 지식재산권의 발명자명에 해당 임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술연구소 내 사무실이 위치하는 것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



▶ [인력] 사례 3

인력 항 목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7-서-2707(2017.10.17.), 기각(기업패소)

분쟁요인 연구원의 연구전담활동 입증 책임과 관련 증빙서류의 효력

> A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기기 제조를 하는 회사임





A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A기업의 일부 직원들은 B연구소 외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구외의 기타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

① 세무조사에서 직원배치표, 조직도, 구내전화번호 및 연락처, 조직 구성도와 근태부를 조사하여서 해당 사실을 확인







"B연구소는 최근 3년 사이에 20여가지 신제품을 출시할 만큼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는 생산관리부서와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연구전담요원에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

"과세관청에서 증거로 제출한 직원배치표, 조직도 등은 당사에서도 잘 모르는 자료이며, 실제 근무사실을 반영한 자료가 아니다"

"테스트기의 설치장소가 생산부에 있어 자주 생산부의 테스트기 설치장소에서 성능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선사항이 파악되면 신규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생산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A 기업

"해당 증빙자료들은 A기업의 동의 하에 이를 제출 받았으며, 해당 자료들은 A사에서 실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임의 또는 오류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월별 실제 연구 전담 근무 직원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3명 미만으로 상기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 "실제 기안한 품의서 등에서도 영업부와 관리부 등 연구소 외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환수를 고지한 과세관청의 잘못은 없다."
- ① 과세대상인 인건비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② 과세관청이 확보한 조직도 등 증빙자료에 의해 연구개발 부서 외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조세심판원

🍆 [인력] 사례 4

인력 목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7-서-3717(2018.03.02.), 기각(기업패소)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사원의 교육이 연구인력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쟁요인

교육위탁계약



A기업은 자동차 및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매대행계약 종료로 인해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



B기업는 자동차 영업매니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회사로 A기업의 위탁을 받아 A기업 소속 대리점 영업사원들의 영업교육을 담당



A기업 소속 대리점들

····· 대리점 영업사원 교육 ······



A기업은 교육훈련비를 지출했음에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공제 누락하여 과세관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





과세 관청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A기업은 자동차 판매 실적의 호조를 위하여 본사 인원이 아닌 대리점 영업사원 대상 교육은 판매 촉진비 또는 홍보비에 해당."

"위탁교육의 실수혜자인 각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 교육훈련비를 A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A 기업

"대리점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중소기업 인력인 경우에도 인력개발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대리점의 영업시원의 영업능력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용이 신기술 보다는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 ① 교육내용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내용으로 고도의 기술이나 기업 가치를 항상을 위한 중요한 기술의 전수가 아님
- ② 영업사원의 교육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육훈련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위탁교육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대리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지출증빙인 거래명세서 또는 송금증, 입출금 통장 사본을 제시하지 않았음
- ③신기술 교육이 아닌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의 쟁점교육 훈련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됨



🍆 [설비] 사례 5

항 목 설비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4-중-1118 (2014.12.10.), 경정

분쟁요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부합하는 설비인지 여부





- A기업은 전자회로 개폐기, 태양열 집열기기, 전열기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음
- A기업은 B설비를 2010년 생산설비로 구매 함



B설비를 생산설비로써 조세특례제한법 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Q1. 해당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해당 설비가 설치된 이후 설비를 통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휴상태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Q2. 그렇다면 해당 설비는 연구장비로써 연구·인력개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해당 설비는 제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과 오차범위를 시험하고 연구개발시 신뢰성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그러나 해당 설비는 연구소가 아닌 생산 공장에 설치 되어 있으므로 연구·인력개발설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0년 생산 설비를 구입 후 시제품 생산 등 품질확보를 위한 기간을 거쳐 2012년에 매출이 발생함."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 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는 산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

A기업 입장에선 해당 설비가 생산라인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로 인정받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함







조세심판원

- "해당 설비가 제품생산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실제 제품 생산이 이루어 졌는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 ①A기업은 설비투자 및 생산품 양산에 소요된 기간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었고,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을 주장하는 내부보고서를 제출
- ② 해당 설비는 생산설비에 설치되어 있고, 제품 생산 공정에 사용되거나 납품할 물품 생산에 필수적인 검사 설비 내지 제조설비로 보임
- ③ 다만, 당초 세무조사시 설비들이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

24

☀ [시제품, 설비, 위탁연구(외주)] 사례 6

항 목 시제품, 설비, 위탁연구(외주)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6-전-1336(2016.12.12.), 경정

분쟁요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기업은 자동차용 공기조절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시제품 및 부품제작에 필요한 Proto금형과 설계도면을 개발



B 연구소

C기업은 B연구소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Proto금형을 제작하였으며 Proto금형은 C기업 내에 설치된 상태

- •설치는 C기업 내에 되어있으나. 소유권은 A기업이 가지고 있음
- · C기업은 Proto금형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을 A기업에만 판매



A기업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금형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이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였다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 청구

Proto 금형





과세 관청

"A기업이 투자한 Proto금형이 C기업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 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시험용이라는 사용 목적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Proto금형은 A기업의 연구시설물이 아니다."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검증하는 시범제작 활동은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구활동."

"Proto금형을 사용한 제작품은 양산제품 생산 전 A기업이 개발 및 설계한 도면에 따라 시범제작 되는 A기업의 시제품이다."

"Proto금형이 C기업에 설치 되었지만, B연구소의 시제품제작 이라는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었다."





조세심판원

- "Proto금형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설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①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연구시험용 시설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Proto금형 소유권은 A사한테 있지만, 동 시설이 A사의 연구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기재부도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금형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조세특례 제도과-552)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사례 7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항 목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4-서-4632(2016.02.25.), 재조사

분쟁요인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시제품)의 재료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A기업은 건축물 외벽구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창호 제조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함







B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함



- A기업은 B기업에 성능시험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위탁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인정)
- A기업은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직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과세관청의 불인정 통지]





과세 관청

"A기업이 시험체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비는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시험 위탁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재료비는 그 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10조에 의하면 자체연구개발비용과 함께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도 연구인력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

"우리회사가 지불한 시험체 제작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시험체 제작에 소용된 비용은 위탁비용에 포함된다."



- ① 시험체란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필수적인 각종 시험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인뢰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일종의 시료
- ② A회사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후의 시험체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B회사에서 해체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것
- ③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 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



☀ [인력,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사례 8

항 목 인력,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0서 3070(2011.07.26.), 경정

분쟁요인 1) 확장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2)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시 시제품 제작인지, 위탁연구 인지 여부

> A기업은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C기업은 **A기업**의 개발 업무 외주를 받은 기업

A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층의 연구소가 있었지만, 연구인력의 증가로 4층까지 확장





- A기업은 자사 기업부설연구소 B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 A기업이 C기업과 맺은 계약은 위탁연구 계약이 아닌 시제품 제작계약으로써 외주가공비로 세액공제를 신청



"A기업이 추가로 임치한 3층 및 4층을 14일 이내에 전담부서 추가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고하여 인정받았는데, 신고가 안된 기간의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관청

"A기업이 C기업에 대한 외주를 위탁연구로 신고했으나 C기업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가를 받지 못해 세액공제가부인되자 시범제작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는 재료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보아서는 이는 시범제작이 아닌 제품개발 의뢰한 것으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에 해당한다."







"연구인원들은 연구를 전담하고 있으며, 확장된 장소 또한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로 간주되었고, 이는 재발급 인증서에도 면적 확장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개발단계 중 기획단계는 게임의 기본 컨셉과 수익창출모델, 게임제작 방향성 및 기본골격을 설정하는 단계로 모든 아이디어는 A회사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므로 이는 단순 프로그래밍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 것이다."



"연구소 확장으로 부인된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전담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인건비 세액공제를 인정해야한다." ① 확장된 연구소가 연구개발 내용이 당초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때와 유시한 점으로 보아 신설이라기 보단 면적 및 인원확장임이 인정됨



조세심판원

- ② B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은 전담 연구 업무를 수행함
- ③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 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

"외주업체는 설정된 컨셉 및 A회사가 제공된 게임소스 등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 [인력. 위탁연구(외주)] 사례 9

인력, 위탁연구(외주) 항 목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8부 4062(2019.06.26.), 기각(기업패소)

분쟁요인 정부출연연구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인건비 세액공제

> A기업은 각종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선박구성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A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 B연구소는 방위산업의 신규국책사업 제안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왔음.
- 그러나 방위산업물자의 특성상 위탁연구 형태로 밖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위탁연구형태 비용이라 하더라도 B연구소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경정청구를 제기





"민간기업으로 부터 재위탁을 받아 플랫폼 등을 개발했으므로 설계 부서 직원들이 방산 부문 업무만을 하지. 않았다."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발팀이 아닌 설계부서에 발령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A사는 직원들의 설계 활동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B연구소의 설계부서 직원들은 모두 연구소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설계부서는 방산부문 소속으로, 방산부문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조직(수리선 사업부, 조선사업 부서)은 설계 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계부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신규 방산물자에 대한 연구개발활동과 기존 함정의 성능개량 및 설계변경 활동 등 방산부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조세심판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방산물자 위탁연구활동을 규정한 특별한 조항이 없고.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A기업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부득이하게 위탁 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활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①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및 부서별 업무 내역 등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46명이 소속된 8개 팀 중 기술개발팀은 한팀에 불과
- ② 설계부서의 업무내역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선박 등의 설계, 배치 및 설계관리 등에 해당
- ③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개발팀이 아닌 설계부서에 근무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설계부서의 설계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 및 해당 연구개발에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사례 10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항 목

사례구분 조세심판: 조심2017부 4566(2019.06.13.), 재조사

분쟁요인 연구인력이 전담연구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세액공제

> A기업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





전기전자 부품의 다양한 선행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



• B연구소는 시제품을 설계, 제작하고 시험하여 납품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 경정청구



"실제 제품사양서를 보면 사양서 자체가 설계도면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A사의 자체기술을 투입하였는지가 확인 되지 않는다"



과세 관청

"시제품 설계 및 제작시 기준이 되는 FPCB 설계표준화 체크리스트 또한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체크항목이나 판정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고객사 허락없이는 수치를 절대 변경하지 못하는 등 A사는 제품사양서에 맞게 설계도를 작성한 것에 불과"

"시제품 개발에 있어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 재료비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해당 비용이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사양서란 제품 스팩을 기재한 도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제품 설계 제작, 시험과정을 반복해서 납품 조건에 맞게 최종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것이 대기업 하청 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자체기술이다."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청구법인에 귀속 됨에 따라 약 40여 건에 이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 재료비를 각종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A사의 고객사는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업체로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A사의 기술개발도 포함되어야함. 즉, A사에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타당함"

- ① A사는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하는 대상사업연도에 취득한 지적재산권이 총 32개로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있었음
- ②A사의 자체 기술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고객사의 사양서대로 설계도만 작성한 후 생산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된 특허권은 A사 고유자체 기술에 해당함
- "시제품 재료비 역시 A사가 계상한 재료비를 객관적 구체적 증빙없이 단순히 양산품과 구분히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액공제 적용을 배척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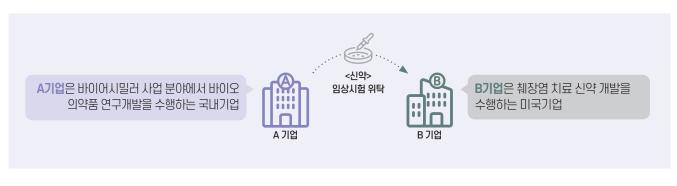
조세심판원





🍆 [위탁연구(외주), 임상] 사례 11

항 목	위탁연구(외주), 임상
사례구분	질의회신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2019.12.27.), 재조사
분쟁요인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기업은 B기업과 췌장염 치료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및 책임을 규정하는 쟁점계약 체결
- A기업은 임상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활동 전단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연구개발 성공 시 임상결과물 일체를 B기업에 이전하며, 연구개발 실패 시 실제 개발비용의 50%만 지급받음
- A기업과 B기업은 각자 창출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자 독점적 소유권을 보유하나, 공동으로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양사가 공동 소유하고 각자 활용 가능





"A기업과 B기업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함."

"그러므로 해당 연구개발활동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간 체결 내용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설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u>바이오</u> 분야

☀ 2020년 과세연도부터 기업이 연구개발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및 작성·보관해야 할 추가 서식 신설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그리고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분야만)의 작성·보관이 인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
 - 제출이 의무화된 연구과제 총괄표에는 세액공제 신청기업이 관리하는 연구 과제별로 선택해서 기입하되, 해당 과제별로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분야만)가 작성·보관되어야함
- 연구과제 총괄표는 법령서식을 활용해야 하며,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노트는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 가능함
 - 서면 작성 및 연구노트 SW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법령양식에 제시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쓰던 기존 양식으로도 사용 가능

★ 신설 서식은 아래를 참고(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0. 3. 13.>		
과세 연도			법인명	
	~	연구과제 총괄표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 원)

① 연번	② 연구과제명	③ 신성장·원천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①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 2. "②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③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overline{}$
\simeq
_
ÇD
O
=
0
=
_
CO
Ċ.
=
9
_
CD.
_
\rightarrow
=
$_{-}$
$\overline{}$
ž,
9
_
_
7
-
S
ĊO
\simeq
()
വ
\leftarrow
= .
O
\rightarrow
_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 4. 연구과제 수행계획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 개요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자율양식)

- 1. 연구과제명
- 2. 연구 내용
- ※ 연구노트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시에만 작성·보관 의무화
- ※ 뒷장의 작성요령을 꼭 숙지 후 작성하기 바람

(4쪽 중 제4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
- *작성기준은 과제별 부서별 연구원별 중 선택 (과제별 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 (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 가능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만 작성)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
-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함)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세액공제 신청관련 서식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검색 후 관련 별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바이오분야

2021년 1월 발행

-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 202-673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 3460-9030
- 인쇄처 경성문화사